

Ⅲ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1.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개요

1.1 내부거래의 정의

- 통상적으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간의 거래, 그 법인과 기업집단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말한다.
- 내부거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 **거래비용의 절감,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 * 거래비용 : 적정한 거래 상대방을 찾고, 협상을 통해 거래를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정적인 수요·공급처를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의 확장 시 리스크 최소화, 빠른 경쟁력 확보**
-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통제권 유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 수급상황에서의 안정성 제고**

부정적 측면

- **배임 또는 횡령 발생**
 - 지배주주가 회사 및 다른 주주의 이익을 빼앗아 자신 or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
-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
 -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 **비계열 독립기업의 생존·발전 어려움**
 - 확보할 수 있는 수요 및 사업기회가 없어짐
- **기업집단 부실화 위험**
 -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우량계열사의 핵심역량이 부실계열사로 분산 유출되어 동반 부실화 위험 존재

1.2 내부거래 규제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구분	부당지원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조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 모든 사업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주식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목적	•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 지원행위 금지	•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부당한 거래 단계의 추가 (통행세) ※ 부당지원행위는 안전지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대 :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용역 거래는 200억) 미만 • 사업기회의 제공 •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대 :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12% 미만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가능) 	

▶ 상법

관련 규정	규제 내용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제397조의 2)	•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제398조)	• 회사가 주요 주주, 이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함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 9)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신용공여 행위 금지 (제1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등과 ①단일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 이상 또는 ②연간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5%이상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제3항), 이사회 승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제4항)
특별 배임죄 (제622조 제1항)	•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세법

관련 규정	규제 내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 (법인세법)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을 재계산하여 과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3)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법에서 정한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귀속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5)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2. 부당한 지원행위

2.1 부당한 지원행위의 개념

①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하게』 의미 (대법원 2004.9.24. 2001두6364 판결)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

☑ 부당지원행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다.

② 부당성 판단기준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㉔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지원주체 :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 지원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동일인 관련자

①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②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내지 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 정상가격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간에 거래되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 지원행위 : 경제적 급부를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매입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2.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판매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 지원금액 : 지원행위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된 경제상 이익의 크기
 1. 지원금액 =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거래수량
 2.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 지원성거래규모 :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 보충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 (지원성거래규모의 10%)

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2.2.1 부당한 자금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자금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금리 vs. 실제적용금리)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경우 (자금 低利대여, 자금 低利예치)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받는 경우 (자금 高利차입, 예금 高利수신)

② 정상금리의 산정

- 개별정상금리 (원칙적 적용)
 -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를 실제적용금리와 비교
 - * 다음 방법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방법으로 산정
 -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일반정상금리 (보충적 적용)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실제 적용금리와 비교
 - 다만, 일반정상금리는 (가)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나)개별정상 금리가 일반 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에만 적용

▶ 상당성 판단 기준

1.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3.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3.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의 차이가 10%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자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관련 사례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 지원이 있었음.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255)

2.2.2 부당한 자산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자산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가격 vs. 실제거래가격)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주식, 기업어음, 회사채 등),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 低價매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자산 高價매입)

② 정상가격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③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非株主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既存株主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에는
 -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 지분율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때에만 지원행위에 해당 (例 : 10%⇒15%)
 - 또한,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함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2.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에게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㉔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크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㉕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㉖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㉗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㉙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관련 사례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2.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 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이 있음.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3.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가외 증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음.

법원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리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5963)

2.2.3 부당한 임대차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임대료 vs. 실제임대료)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低價임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 高價임차)

② 정상임대료의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정상임대료로 산정
 -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정상임대료를 산정
- $(\text{부동산정상가격}50/100)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365 = \text{당해 기간의 정상임대료}$
 -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text{부동산 정상가격의 } 50/100)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365 = \text{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 ②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text{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365 = \text{임대료}$$
- 계열사 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2.2.4 부당한 상품용역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규제대상 포함여부

- 상품·용역의 거래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어 규제대상이 됨

② 정상가격의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상품·용역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열사 지원시 지원추제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을 따라야 한다.
 - ①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 ②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 ③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비용 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등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 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인쇄비/물품 구매 위탁수수료/ 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안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③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관련 사례

사실관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함.(지원금액 약 19,992백만원)

공정위 판단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함.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원 부과함(SK텔레콤 3,198백만, SK브로드밴드 3,198백만).

관련 사례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 지급 지체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킴.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 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줌.

법원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을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 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을 보인 점 등을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사실관계

기업집단 KPX소속 진양산업(주)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원료의 수출 영업권(약 3,677백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

법원 판단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기존 매출의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35백만원 부과함.(진양산업 1,362백만, 씨케이엔터 273백만)

2.2.5 부당한 인력 제공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급여 vs. 실제지급급여)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실제지급급여)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정상급여)보다 적은 경우
 - 정상급여보다 실제지급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당해 인력이 지급받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주체가 부담한 것이 되어 지원행위가 성립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OO등 자신의 직원 11명에서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OO는 2007.5.31부터 2011.3.28까지, 그리고 박OO는 2011.3.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2.2.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 (소위, 통행세)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

②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기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달성 등 구체적 역할 입증.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 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2.2.7 우회지원행위 행위(제 3자 매개 간접거래)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주체↔제3자↔지원객체)**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

② **우회지원행위에서의 지원금액 산정**

-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킬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의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관련 사례

사실관계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켄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켄의 원재료_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2017년9월)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2.3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례(심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 제재

범위반내용

(주)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었으며, (주)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음.

(주)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주)이니스프리, (주)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하여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 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 능력도 부재하여 자력으로 금융 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그 결과 (주)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음.

이때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주)코스비전의 개별 정상 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주)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원)까지 수령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제재내역

1. (시정명령)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주)코스비전
2. (과징금) (주)아모레퍼시픽그룹(4,800만원), (주)코스비전(4,800만원)

법위반내용

1.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함.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 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MJA의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함.

2. 와인 판촉 사원 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 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음.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판촉 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 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함.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음.

3. 인력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 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으며 MJA는 와인 임대 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 마감 등)를 맡김.

조치사항

- 1.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 (인력 제공 한정)
- 2. (과징금) 총 1,185백만 원 (롯데칠성: 707백만 원, MJA: 478백만 원)
- 3. (고발) 롯데칠성음료 (법인)

의의 및 기대효과

- 1.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
- 2.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 내 잠재적인 경쟁 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3.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함.

법위반내용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향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해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 거래조건 설정함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이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함.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임.

2. 미전실,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및 관계사 확산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확정(13.2월말) 하였으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 및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

미전실은 전자 급식개선 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 개입함.

3.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식수물량 이탈 방지)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대외 개방(경쟁입찰)을 중단(지시) 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됨.

4. 4개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13~19년 평균)을 시현하였고,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함.

수수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함.

조치사항

-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총 234,927백만 원)
 - . 삼성전자: 101,217백만 원
 - . 삼성디스플레이: 22,857백만 원
 - . 삼성전기: 10,511백만 원
 - . 삼성SDI: 4,369백만 원
 - . 삼성웰스토리: 95,973백만 원

- 고발 : 삼성전자(주), 前미전실장

의의 및 기대효과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임.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음.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에스케이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법위반내용

[휴대폰 결제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낮게 적용을 통한 지원행위]

에스케이텔레콤은 '09.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함.

'멜론'의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동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

에스케이텔레콤은 '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하였으나, '1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여 줌으로써 로엔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으므로 로엔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써의 지위를 공고히 한 '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함.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의의 및 기대효과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법위반내용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월 12. 1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섬뽕 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다음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1. (고가 매입)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월부터 12.1월부터 17.2월까지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
2. (통행세 거래)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2.2월부터 17. 2 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함.
3. (주식 저가 매각) 제일홀딩스는 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3. 1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섬뽕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제1항, 동조 제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88백만원 부과

의의 및 기대효과

1. 동일인 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함.
2. 계열사들에 의한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객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한 시장을 넘어 자신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함.

Q1.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1.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Q2.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2.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Q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A3.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
-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 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조 제 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2.4 내부거래 시 주의사항

▶ 원칙 : 내부거래 시 비계열사와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거래조건 설정

자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을 대여 받는 회사(지원객체)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 산정 유사 시기, 유사 규모, 유사 차입기간의 자금을 독립된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경우의 금리 수준
자산거래 (주식,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을 산정하여 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조건의 비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조건 참고 동일한 조건의 거래 없는 경우, 인근 부동산(최대한 유사한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위치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것)의 비계열사간 거래 조건 참고 (임대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관리비 등 기타 조건도 고려)
인력파견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제공 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를 일치하여야 함 2 이상의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에 따른 급여 적정 배분

- 수의계약 거래 - 수의계약 기준 및 사유 적정성 검토 (거래조건 검토)
 1. 시장조사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하고
 2. 제안서 제출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3. 합리적 사유로 선정해야 함
- 중간 마진 거래
 1. 거래 중간단계의 계열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마진)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지 평가
 2. 중간 역할의 계열사가 없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직접 비용과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교하여 거래 여부 결정

3.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3.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개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④ 대상

- 지원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동일인이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의미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분의 보유 여부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한다.
-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동일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을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제공주체 : 금지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특수관계인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특수관계인 회사 : 계열회사 중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회사/비상장회사 동일)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제공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 이익제공행위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의 제공, ③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3.2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유형

3.2.1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상품·용역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실제지급급여)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정상급여)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 **적용제외**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 억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즉, i)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ii)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2. 고가매입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4.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하지 말아야 한다.
5.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6.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 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7.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점용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11.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변경함.

공정위 판단

피심은 편대증권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HST와 복합기 임대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1백만원)을 부과함.

3.2.2 사업기회의 제공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 ①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다른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이 200 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 제공행위가 없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시간·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㉔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㉕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㉖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㉗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㉘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㉑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㉒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㉓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㉔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㉕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①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 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㉑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㉒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㉓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㉔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㉕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㉖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3.3 사익편취 제재 사례(심화)

기업집단「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법 위반내용

[김치구매]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 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2013년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 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1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하여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함.

김기유는 2014년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19만 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함.

한편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인구매]

메르뱅은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해왔음.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했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하여 와인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 전(全)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라는 점 때문에 메르뱅이 제시하는 가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원효과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은 2016년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거래 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했다.

조치내용

1.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이호진]
2. 과징금: 총 21.8억 원 (잠정)
3. 고발: [법인]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개인] 이호진, 김기유

「한국타이어」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가 (주)한국프리스티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함.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 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스티전웍스(이하 'MKT')를 지원함.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음.

*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되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함,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함.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

적용법조 조치내용

1. 적용 법조 :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3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총 80억 3백만 원
(고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임.

특히,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SK(주)의 사업기회 제공 사례

법 위반내용

SK(주)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주)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나아가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주)가 앞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이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SK(주)의 입찰 참여를 포기토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열회사 잔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함(법인 8억원, 특수관계인 8억원)